

# 소 장

원 고 김가연

피 고 주식회사 케이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정자동)

대표이사 황창규

공개 청구의 소

##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가 가지고 있는 원고의 개인 정보를 공개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청 구 원 인

## 1.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고객들에게 이동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동통신회사로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sup>1)</sup>이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sup>2)</sup>에 해당합니다. 원고는 피고와 이동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제공하는 이동전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입니다(갑 제1호증 olleh 신규신청서 사본).

## 2. 원고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 가. 원고의 법률상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4항에 의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sup>3)</sup> 따라서 이용자인 원고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피고에게

---

1)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통신”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전자적 방식으로 부호·문헌·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중략)

7. “전기통신업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자”란 이 법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신고가 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 전기통신업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9. “이용자”란 전기통신업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와 전기통신업무를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2)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업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한다.

4. “이용자”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피고가 가지고 있는 원고의 모든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할 법률상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열람청구권의 대상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정보통신망법 제2조 제6호). 또한 “정보주체가 직접 제공한 개인정보 이외에 제3자 또는 공개된 소스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 개인정보처리자가 생산한 개인정보, 서비스제공 등의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생성된 개인정보 등”<sup>4)</sup>도 포함됩니다.

#### 나. 원고의 계약상 개인정보 열람청구권

피고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제9장에 의하면 이용자는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갑 제2호증 KT 개인정보처리방침).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언제든지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가 있으며 피고는 열람을 해줄 계약상 의무가 있습니다.

---

3)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② 이용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대한 열람이나 제공을 요구할 수 있고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가지고 있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현황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의 동의를 한 현황

(중략)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열람 또는 제공을 요구받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행정안전부, 「개인정보 보호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 2011. 12., 286쪽

### 3. 개인정보 공개 청구의 필요성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에게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했으나, 피고는 수집한 원고의 개인정보 중 일부만을 열람·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가 가지고 있는 원고의 개인정보를 모두 공개할 것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 가. 피고의 개인정보 수집

피고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장에 의하면 피고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갑 제2호증):

- |  |
|--|
| <p>가.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동전화번호, 연계정보(Connection Information), 중복가입확인정보(Duplication Information), 주소, 연락처번호, 이메일주소</p> <p>나. 요금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계좌(카드) 정보 등 금융정보, 신청인과의 관계</p> <p>다. 서비스 이용 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는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서비스 이용시간/이용기록(통화시각, 사용도수 포함), 이용정지기록, 이용정지/해지 사유, 스팸차단서비스에 의해 차단되는 스팸메시지 원문 및 발송통신사, 착/발신 전화번호, 접속IP, 결제기록, 접속로그, 이용콘텐츠, 쿠키 등 서비스 이용정보</li><li>○ 단말기 정보(모델명, IMEI번호, USIM 정보 등), 위치정보(기지국위치, GPS정보 등), 개통일자, 지원금 수혜여부</li></ul> <p>라. 기타 정보</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이용요금의 할인을 위한 국가유공자증명, 복지할인증명 등 제증명 사항</li><li>○ 번호정보 안내 등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li><li>○ 주소변경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li><li>○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단,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li></ul> |
|--|

## 나. 원고의 1차 개인정보 열람청구

원고는 2016. 6. 12. www.olleh.com 웹사이트에서 피고에게 개인정보 열람 신청을 했으며, 2016. 6. 17. 피고로부터 개인정보 열람신청 결과 통지서(갑 제3호증)를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이 피고가 수집한 원고의 개인정보 중 일부의 보유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KT 개인정보 열람신청 결과 통지서]

#### □ 결과 통지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아이디
○	○	○	○	○	X
통합청구번호	은행/카드사명	계좌/카드번호	예금/카드주	예금/카드주 주민번호	카드유효기간
X	○	○	○	X	○
기 타	김가연, 휴대폰 번호 11자리,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다. 원고의 2차 개인정보 열람청구

원고는 2016. 6. 15. 서면으로 개인정보 열람을 신청했고(갑 제4호증 개인정보열람신청서, 갑 제5호증 개인정보열람신청 이메일), 2016. 6. 16., 6. 20. 두 차례에 걸쳐 피고의 개인정보관리책임자로부터 이메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갑 제6호증 KT 답변 이메일). 피고는 이메일 답변을 통해 가, 나 항목은 온라인 개인정보 이용내역 열람을 통해, 다, 라항은 올레플라자에 내방하여 본인확인 후 통화내역 열람, 수납내역서, 개통확인서, 가입내역서 자료 요청을 통해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 라. 원고의 3차 개인정보 열람청구

원고는 2016. 6. 28. 안내받은 바와 같이 강남 올레플라자에 방문하여 본인 확인 후 별도의 서면 요청을 통해 olleh 신규신청서 사본(갑 제1호증), 가입내역서 사본(갑 제7호증), 요금수납확인서(갑 제8호증), 통화내역서를 제공받았습니다.

## 마. 개인정보 공개 청구의 필요성

원고의 3차에 걸친 개인정보 열람청구로 열람·제공된 정보는 1) 원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주소, 아이디, 통합청구번호, 은행/카드사명, 계좌/카드번호, 예금/카드주, 예금/카드주 주민번호, 카드유효기간의 보유 여부, 2) 신규신청서 사본, 3) 가입내역서 사본, 4) 2007년 - 2016년 요금청구내역 및 요금수납내역, 5) 신청일 직전 6개월간(2015. 12. 1. - 2016. 6. 28.)의 통화일시, 발신번호, 사용도수 등 통화 서비스 이용내역입니다.

앞서 보았듯 원고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권의 대상은 피고가 수집한 원고의 모든 개인정보입니다. 하지만 피고는 수집한 원고의 개인정보의 일부만을 열람·제공하였기에 이 사건 소로 공개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 바. 원고의 손해

피고는 특정 개인정보는 올레플라자를 방문하여 별도의 열람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방식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의 수집방법보다 쉽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 제30조 제6항에 반하여 위법합니다. 이러한 피고의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은 추후 청구할 예정입니다.

## 4. 결 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피고가 수집한 원고의 모든 개인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 증 방 법

- |           |                  |
|-----------|------------------|
| 1. 갑 제1호증 | olleh 신규신청서 사본   |
| 1. 갑 제2호증 | KT개인정보처리방침       |
| 1. 갑 제3호증 | 개인정보 열람신청 결과 통지서 |
| 1. 갑 제4호증 | 개인정보열람신청서        |
| 1. 갑 제5호증 | 개인정보열람신청 이메일     |
| 1. 갑 제6호증 | KT 답변 이메일        |
| 1. 갑 제7호증 | 가입내역서 사본         |
| 1. 갑 제8호증 | 요금수납확인서          |

2017. 2. 24.

원고 김 가 연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별지]

가.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동전화번호, 연계정보(Connection Information), 중복가입확인정보(Duplication Information), 주소, 연락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나. 요금납부자의 성명, 생년월일, 계좌(카드) 정보 등 금융정보, 신청인과의 관계

다. 서비스 이용 또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는 정보

- 서비스 이용시간/이용기록(통화시각, 사용도수 포함), 이용정지기록, 이용정지/해지 사유, 스팸차단서비스에 의해 차단되는 스팸메시지 원문 및 발송통신사, 착/발신 전화번호, 접속IP, 결제기록, 접속로그, 이용컨텐츠, 쿠키 등 서비스 이용정보
- 단말기 정보(모델명, IMEI번호, USIM 정보 등), 위치정보(기지국위치, GPS 정보 등), 개통일자, 지원금 수혜여부

라. 기타 정보

- 이용요금의 할인을 위한 국가유공자증명, 복지할인증명 등 제증명 사항
- 번호정보 안내 등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
- 주소변경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정보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신청인과의 관계(단,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 정보 수집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마. 그 밖에 피고가 수집한 원고의 개인정보 일체